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로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둔다.

제3조(성격과 목적)

본회는 서울 자주통일평화연대 산하 지역조직으로서 서울시 강동지역 각계각층 단합을 통해 민주주의 주권 고양·한반도 영원한 평화실현·한반도 자주통일 기반 마련 목적으로 설립한 상설 연대기구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지역의 각계각층이 모여 다양한 실천과 운동을 펼쳐, 대한민국의 주권회복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주요 의제>

1. 자주통일과 평화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
2. 한반도 전쟁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반 사업
3. 남북공동선언 정신 계승 및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
4. 분단 잔재와 식민주의 청산 및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
5. 참여단체 확대와 회원 조직 사업
6. 미래세대를 비롯한 자주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7.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한 정책개발, 홍보, 출판, 다양한 매체 개발 및 운용 사업
8. 평화애호세력과의 연대 사업
9.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후원 및 재정 사업
10. 기타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본회의 목적 및 규약에 동의하는 강동지역 내 시민사회, 정당, 종교 등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탈퇴)

본회에 가입 및 탈퇴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 및 탈퇴를 하되, 공동대표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단, 가입단체가 자체 해산할 경우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조직)

조직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공동대표자회의
3. 집행위원회

제8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피선거권,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2. 조직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 진행 등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규약을 비롯한 제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월 정기분담금, 특별 분담금 등의 분담금과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10조(해산)

본조직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할 수 있다.

제3장 기관과 회의

제1절 총회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강동자주통일연대 취지와 사업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하며 매월 정기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총회는 과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불참시 다른 위임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명예대표, 상임대표, 감사)의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적인원 2/3에 의해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2절 공동대표자회의

1. 본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구이다.
2. 공동대표자회의는 강동자주통일연대 취지와 사업에 동의하는 각 기관의 대표자와 절차에 따라 임명된 개인으로 구성한다.
3.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추천 및 선출된 1인을 상임대표로 한다.
4. 공동대표자회의는 과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대표자회의 불참시 다른 위임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5. 공동대표자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제11조(권한) 공동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집행위원장, 특별위원장, 과제별위원장, 사무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4. 고문, 자문위원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

5. 운영규칙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동대표자회의에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12조 (의무)

공동대표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의 성원으로 조직의 제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조직의 확대 강화를 위한 활동과 재정 자립을 위해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13조 (소집과 운영)

1. 일상적 의사결정을 위해 공동대표회의는 두달에 한번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공동대표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동대표자회의 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공동대표 의장인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제2절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 공동대표자회의가 의결한 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17조(구성과 운영)

1.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분야별위원장 및 주요 회원단체 집행담당자로 구성 한다.

제18조(소집)

1. 집행위원회는 매월로 진행하되, 공동대표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집행위원 1/4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5절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가 의결한 한 특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된다.

제21조(구성과 운영)

1.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해산은 공동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2. 특별위원회 사업은 공동대표자회의에서 보고 및 논의 한다.

제4장 임원

제22조(상임대표)

1. 본 조직은 10명~15 내외의 공동대표를 둔다. 단 여성 30% 참여를 지향한다.
2. 상임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소속단체의 임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3. 상임대표는 일상적 의결단위의 성원으로서 조직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비용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25조(감사)

1.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독할 1-2인의 감사를 두며, 그 선출은 공동대표자회의에서 한다.
2. 감사는 사업과 재정업무의 감사결과를 공동대표자회의에 보고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5장 고문, 자문위원

제26조(고문, 자문위원)

1.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며,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위촉한다.
2. 고문단과 자문위원단은 회의를 통해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안 및 자문할 수 있다.

제 6장 집행부

제27조(집행위원장)

1. 본회의 목적실현과 사업 집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약간명의 집행위원장을 둔다.
2. 집행위원장은 주요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 의장의 임면,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8조(상설/과제별 위원장)

1.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상설위원회, 과제별위원회를 둔다.
2. 상설/과제별 설치와 폐지는 공동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3. 상설/과제별 등의 위원장은 공동집행위원장의 추천, 상임대표의장의 임면,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29조(사무국)

1. 본회의 사업 집행에 있어 제반 실무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처 총괄을 위해 사무국장을 두며, 상임대표의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 7장 재정

제30조(수입과 지출)

1. 본회의 재정은 가입단체 및 회원의 월 정기회비, 특별 분담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2. 년 예산외에 지출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한다.

제31조(정기회비)

1. 가입단체의 정기회비 등은 공동대표자회의에서 토론 및 결정한다.

제32조(회계년도)

- 조직의 회계연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규약개정)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2.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칙(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조(시행)

1. 개정된 규약은 공동대표자회의를 통과한 즉시 발효된다.

제3조 (경과규정)

1. 본회의 정관은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 정관이 제정 및 개정되는 경우 그에 부합하게 개정한다.
2. 2026년의 회계 년도는 본회의 전환 총회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전환된 본회 임원의 임기는 2029년 정기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새 기수의 임원이 선출될 때 까

지로 한다.

제4조 (준용)

1. 본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